

2020년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매뉴얼



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요약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舊.패밀리기업지원사업)이란,

경기도 27개 시군에 위치한 <u>연매출 120억 이내</u>의 지방세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출원, 시제품, 시험분석, 전시회,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 창안개발에서부터 판로개척까지 여러 세부과제를

<u>각 한도 내에서 연간 2,000만원(단, 시흥시 1,000만원 한도)까지</u> 복수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모집일					
신청 방 법		! 신청 및 온라인 완료보고서 제출 기동 후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사전 신청사업	사후 신청사업			
구분	선정발표일 이후 진행하여 10월 31일까지 완료할 과제신청	2020년 1월부터 공고시점까지 완료한 과제 신청			
지원 과제	산업재산권출원 (국내특허, 국내실용신안), 시제품제작(금형,목업), 홈페이지, 국내전시박람회, 모바일앱, 제품패키지개선, 국내홍보판로(전문잡지,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산업재산권출원 (국내외상표, 국내디자인) 국내외규격인증 시험분석 * 2020년 발행 인증서, 출원서, 성적서 기준			
	제작계획, 제작업체, 견적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온라인신청 ▼	2020년 1월부터 공고시점까지 진행완료 및 비용지출			
	심사 후 선정	온라인신청			
추진 절차	▼ 진행 및 비용지출 ▼	▼ 서류검토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 ▼	심사 후 지원결정			
	서류검토	신청기업에 지원금지급			
	▼ 신청기업에 지원금지급	COZIEWI ACEAAE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규모: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단, 시흥시 1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다. 지원기간 : 2020. 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라. 지원내용: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판로개척 등 맞춤형 기업지원

분	O‡	단위사업별 지원
창 안	개 발	· 국내산업재산권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제공 지원
제 품	생 산	ㆍ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지원
판 로	개 척	· 홈페이지 제작, 국내 전시회, 모바일 앱 제작, 제품패키지 개선, · 국내 홍보판로 지원(전문잡지,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마.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연매출 120억 이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현황 (27개 시군) >

- · 본 사(9)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 남부권(4)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 서부권(4) : 부천, 시흥, 광명, 김포
- \cdot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17개소) >

- ·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성, 부천, 김포, 고양, 남양주, 의정부(1)(2),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의왕, 판교
- O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O 유의사항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지원절차



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3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센터별 상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O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①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②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필수	③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국세청 또는 세무서)
	④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해당사업 견적서 ⑥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1 T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기업
가점 항목	•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87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아. 문의 및 접수처

권역(부서)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본사	광주, 군포, 의왕, 여주, 하남, 양평, 오산	정기호	031- 259- 6059
	수원	박준식	031- 259- 6276
<i>(SOS</i> 지원팀 <i>)</i>	화성	홍선 아	031- 259- 6277
북부권역	양주, 남양주	조용택	031- 850- 7123
	고양, 동두천, 연천, 포천	양이나	031- 850- 7124
(북부권역센터)	가평, 구리, 의정부, 파주	임선빈	031- 850- 7128
	시흥	김장식	070- 7116- 4811
서부권역	광명	김학용	070- 7116- 4815
<i>(</i> 서부권역센터 <i>)</i>	부천	구현애	070- 7116- 4814
	김포	김남수	070- 7116- 4816
	안성	박진수	070- 7726- 9325
남부권역	평택	이연희	070- 7726- 8642
(남부권역센터)	용인	한미연	070- 7726- 9322
	이천	양미소	070- 7726- 9323

자. 지원내용: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건당 지원한도, 지원요건 등 상세내용은 공통 운영기준 및 단위사업별 운영기준 참조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구 분	단위 지원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i>(</i> 지원비율 <i>)</i>	시흥	광명	부천	김포
	국내외	• (사후)상표, 디자인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상표출원 : 국내·외 / 디자인출원 : 국내	국내상표 200 국외상표 500 디자인 280	0	0	0	0
창 안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 국내특허, 실용신안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기관 수수료 등	국내특허 520 실용신안 360 (50%)	0	0	X	X
개발	<mark>(사후)</mark>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국내)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해외)해외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일부	국내300만원 해외700만원 (50%)	0	0	0	X
	산업기술 정보제공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 기업체에 제공	200만원 (100%)		(한국과학기 한국처 : 구 02		<u>2</u>
제 품	시제품 제작 지원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 연간 1개 분야만 신청 가능/금형, 목업 중 태1	금형 1,400만원 목업 500만원 (50%)	금형 <i>O</i> 목업 <i>O</i>	금형 <i>O</i> 목업 <i>X</i>	금형 <i>O</i> 목업 <i>X</i>	금형 <i>O</i> 목업 <i>X</i>
생 산	<mark>(사후)</mark> 시험분석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비 지원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150만원 (50%)	0	0	0	0
	홈페이지 제작 지원	• 한글/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150만원 (50%)	0	0	0	0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국내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시 소요비용 지원(부스비, 기본장치비 등)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국내 300만원 (50%)	0	0	X	x
판	모바일 앱 제작 지원	• 기업 제품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글 또는 외국어로 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150만원 (50%)	0	X	X	X
로 개 척	제품패키지 개선 지원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 포장지 등 디자인 · 제작비용 지원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300만원 (50%)	0	0	X	x
		•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 동영상 및 전문잡지 중복참여 불가(해1)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300만원 (50%)	0	X	X	X
	국내 홍보판로 지원	홍보 지원 동영상 * 동영상 및 전문잡지 중복참여 불가(테)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300만원 (50%)	0	X	X	X
		•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를 위해 외국어(국문)으로 제작하는 제품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 지원규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200만원 (50%)	0	0	0	0

※ 시군별 지원여부 변동가능

[별표 1]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전자상거래업	4791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광고업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 경영컨설팅업	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확인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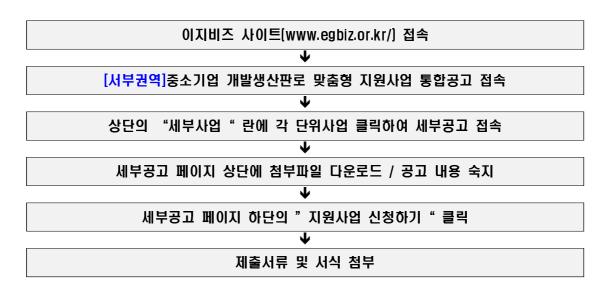
[별표 2]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세소합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도매 및 소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75330中	흥신소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PC 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통 운영기준

3.1 지원사업 신청 시



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 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당해년도 발행본 첨부
- O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당해년도 발행본 첨부
- O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나. 지원사업 신청기업이 제작업체를 선정할 시 유의사항

- O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 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다.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O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6)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호 항목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 함.

3.2 지원사업 선정 시

가. 선정되신 모든 기업에게

- 본 지원사업은 사업비출연 27개 시군내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즈업 영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27개 시군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 경기도와 시군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선정기업은 과제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원절차 및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결정 통지문 확인

- O 기업별 자세한 선정내역은 선정발표일에 기업담당자의 이메일로 발송되는 "지원결정 통지문(별표 3)"과 "단위사업별 운영기준"을 반드시 숙지
- O 지원결정 내역 확인
 - 지원결정 내역의 신청분야, 지원내용, 제작(대행)업체, 진행기간, 총 소요비용, 지원예정액, 유의사항 확인
 - 지원결정 내역의 '총 소요비용', '지원예정액'은 신청서 작성 時 산정오류(견적금액,부담률, VAT포함 등), 예산한도 및 선정심사과정에서 지원결정(액) 등에 따라기업에서 신청·제출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시제품제작(금형)의 경우, 원가분석을 통해 지원예정액이 최종 확정통지 됨.
- 선정기업 유의사항 및 지원금 지급신청(완료보고서 제출)안내 필독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다.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진행기간 변경 시] ∠

(제작업체 변경시)

-【제3호】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 [제3호]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Ŧ

[이지비즈]-[마이페이지]-[나의참여사업]-[지원금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파일 첨부

- O <u>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를 원칙으로 함</u>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진행기간, 제작업체)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경기도경제과학 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후 【제3호】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O 담당자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O 다만 불가피하게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 담당자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함
- 중도포기 기업은 선정지위 회수 후 배정된 지원예산을 후순위 기업 및 추가모집 선정기업에게 배정·지원함

라. 지원결정 중도포기 신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승인 후 [제4호]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FAX. 031-432-5536, 담당자별 이메일 별도 안내)



[이지비즈]-[마이페이지]-[나의참여사업]-[신청취소/포기]클릭하여 처리

- 결정된 지원사업을 중도포기 시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후 【제4호】지원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지원사업을 중도포기함에 따라 제재사항 및 차년도 지원사업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마.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비용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완료보고 시【제5호】전자세금계 산서 미사용 사유서를 함께 제출

2014.7.1부터 직전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사업 지출증빙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대행업체(사업자) 에서 이를 미사용할 경우, "【제5호】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를 작성 후 첨부 요망

- O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제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업 자부담임
 - 선정기업이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 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 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O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바.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O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O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O 선정기업이 어떠한 요청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자료 보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함.
- <u>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소요비용</u> 증빙이 불가한 경우
- O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O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O 사업 추진 중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한 경우 지원 결정 취소

п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별표3] 선정기업에게 발송되는 지원결정 통보문

2020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2020. XX. 서부권역선					
	(2020년 제0차 지	원결정 내역서			
기 업 명	{{기업명}}	대표자	{{대표자}}		
소 재 지	{{시군}}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신청분야	{	{{신청분야}}			
지원내용	- {{지원분야}}				
대행기업	{{대행기관}}	소요기간	{{시작일}} ~ {{종료일}}		
총 소요비용	{{소요비용}}원	지원예정액	<u>{</u> {지원금액}}원		

○ 선정(지원결정) 기업 유의사항

- **지원결정 사항 임의변경 불가** (변경사항 발생시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 **지원결정 통보일 이후 비용 지급분에 한하여 인정**(단, 사후지원 분야 등은 제외).
- 최종 소요비용이 지원예정액 보다 적은 경우, 지원금액은 실집행금액(VAT제외) 기준으로 감액 조정됨. (기 결정 통보된 지원액은 증액될 수 없음)
 - * 지원금 지급은 실 집행내역 적합성 검토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타 기관 중복지원 확인 등의 부적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결정은 취소되고 지원된 지원금을은 환수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완료보고서 제출) 안내

- ☞ 사후 지원분야(상표/디자인, 규격인증, 시험분석)는 지원금 신청절차 불필요
- ☞ 소요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금 신청(완료보고서 제출)을 하여야 함.
- ① 지원금신청서 및 완료보고서(증빙자료 포함) 등 각 1부
- ②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2개월 이내 발행, 유효기간 확인) 민원24발급
- ③ 전자세금계산서 및 소요비용 온라인입금확인증 각 1부
- ④ 기업명의 통장사본(온라인입금확인증에 기록된 통장) 1부
- ⑤ 기타 해당사업별로 요청하는 서류 및 담당자 요청서류 등
- ⑥ 지원성과 설문서 必

※ 지원분야별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공고문(제출서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원금 신청서 제출 등 사업진행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①~⑥ 등 제반 서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이지비즈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한 자료(잡지, 카탈로그 등)은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우편주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237 시흥비즈니스센터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센터

2.3 선정기업 완료 시

[진행기간 내]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 및 제출서류 참조하여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준비



[이지비즈]-[마이페이지]-[나의참여사업]-[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서 제출] - PDF파일 업로드

[수정사항 발생시] ∠

(서류완전 시)

기업담당자에게 문자 및 이메일로 알림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연말에는 회계업무 집중으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이지비즈]-[마이페이지]-[나의참여사업] -[지원금신청서 수정]-[수정요청이력보기] -수정사항 확인 후 수정완료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연말에는 회계업무 집중으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가.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기한 : 선정기업이 사업신청 당시 온라인신청서에 기재한 '진행기간'內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 연장가능)
 - ☞ 과제 완료기업은 진행기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라 지원금 조기 지급함
 - © 연말에는 회계업무 집중으로 <u>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u>, 가능한 과제추진을 조기에 완료하고 결과보고 및 지원금신청서 제출 요망
- O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 및 서식을 참조하여 제출서류 일체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온라인 제출, 산출물은 우편으로 제출
 - 온라인 제출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설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세금계산서,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선정기업 통장사본(선정기업명 계좌)
 - 우편 송부 : 산출물(기업명 확인가능해야함)
 - ☞ 각 단위사업별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단위사업별 운영기준"을 확인
- 금형 제작, 목업 제작은 보고서 접수 후 현장방문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현장실 사(확인) 후 지원금 지급
- O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

□. 신청 및 완료보고시 제출서류(사전분야 기준)



2020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 시

구분	제출서류	내용
	① 지원신청서	- 온라인에서 작성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 서식 다운로드
	③ 사업자등록증명	- '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국세청(www.hometax.go.kr) 발급
필수	④ 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증명)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민원 24 (www.minwon.go.kr) 발급
	⑤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전년도 재무제표 미결산시 2018년도 재무제 표와 2019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제출 국세청(www.hometax.go.kr) 출력분 및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⑥ 해당사업 견적서	- 제작업체 발급
	⑦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 제작업체 발급
선택	⑧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	-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제출 - 중소기업청 창업넷(www.bi.go.kr) 발급
신박	⑨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시 제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급
	⑩ 공장등록증명서	- '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www.femis.go.kr) 발급
가점시	⑪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 G-STAR기업(경기도 스타기업, 경기도 글로 벌 강소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착한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 성기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준수 기업 등
	⑫ 보유 산업재산권 <u>등록</u> 서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국내외 규격인증,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 \cdot $0 \sim 7$ 은 필수 제출서류이며, $8 \sim 2$ 은 해당 시에만 제출
- · 사후신청사업 신청 시 각 단위사업별 [제출서류]란에 명시된 지출증빙과 함께 제출 ※ 사후신청사업 : 국내외상표출원, 국내디자인출원, 국내외규격인증, 시험분석
- ※ 필수 첨부서류 누락시 평가에서 제외
- ※ 이지비즈 세부공고페이지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하여 상단의 서류 스캔본을 첨부
- ※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과제의 제출서류만 작성
-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장수를 늘려서 작성

■ 지원사업 완료 시

구분	제출서류	내용
	①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 참조
	② 만족도 설문서	- 【제2호】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③ 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증명)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필수	④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제 5호】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를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과 함께 제출 - 법인카드 결제시 법인카드 앞면 사본, 카드사용 영 수증, 결제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제출
	⑤ 이체확인증	 온라인 입금증(선정기업의 계좌번호 확인 가능해야함) 현금거래 및 어음 불인정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⑥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 신청기업명 계좌
해당시	⑦ 산출물(우편송부)	-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 참조 - 카탈로그, 전문잡지, 홍보동영상

- · 사후신청사업 신청시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 [제출서류]란에 명시된 지출증빙과 함께 제출 ※ 사후신청사업 : 국내외상표출원, 국내디자인출원, 국내외규격인증, 시험분석
- ※ 제출서류 일체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온라인 제출, 산출물은 우편으로 제출
- ※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과제의 제출서류만 작성
-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장수를 늘려서 작성 바랍니다.

Ⅲ. 자주하는 질문 및 기타

Q. 지원대상 일까요?

▲ 사업비출연 시군 소재 본사 또는 공장(사업자등록증)이 위치한 지방세완납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공고 및 매뉴얼을 참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언제까지 완료해야하나요?

▲ 신청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진행기간 내 완료해야 합니다.(최대 10월 31일까지)

Q. 공고가 어디있나요? 사업신청 버튼이 어디에 있죠?

▲ 이지비즈 사이트에 접속 ➤ 상단의 "사업신청" 카테고리 클릭 ➤ 공고 목록 중 "[북부권역]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 클릭 ➤ 상단의 "세부사업"란에서 신청하고자하는 과제를 클릭 ➤ <u>과제별 공고페이지</u>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Q. 신청서 양식이 어디에 있죠?

▲ 과제별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면 상단의 주황색 칸에 한글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Q. 신청서류나 파일은 어디에 올리죠?

- ▲ <u>과제별 공고페이지</u>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하면 뜨는 새 창에서 신청서작성 후 '별첨파일' 또는 '신청서 첨부파일'란에 첨부하면 됩니다.
- Q. 시스템관련문의(창이 안떠요, 입력이 안돼요, 오류가 나요, 등의 시스템오류)
- ▲ 브라우저 종류가 크롬인 경우 온라인신청서 작성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계속된 시스템장애 발생시 031-259-6299 으로 문의하시면 원격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중복신청가능한가요? 지원한도는요?

시 기업이 필요한 단위사업을 선택하여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총소요비용의 50%이고 각 과제별 한도가 다르니 세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금형 등 원하는 것을 한도 내에 자유롭게 신청 가능)
 단, 시흥시는 연간 최대 1,000만원 한도

Q. 신청하면 다 선정이 되나요?

▲ 신청한 지원대상 기업 중 평가표에 의해 서류심사가 진행됩니다. 시제품제작(금형, 목업)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시군별, 과제별 경쟁률에 따라 선정여부가 상이합니다.

Q. 이번에 신청기간에 신청 못할 것 같은데...

▲ 예산 소진시까지 2차, 3차모집이 진행될 수 있지만 시군별로 예산과 경쟁률 등이 다르기에 조기소진으로 다음 차수모집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출서류가 뭔가요?

▲ 이지비즈 사이트 내 각 단위사업 공고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후신청사업이 무엇인가요?

▲ 2020년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상표디자인 출원 / 규격인증 / 시험분석의 각 종 증빙서가 발급 완료된 건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Q. 사후신청 과제인데 신청해놓고 진행하면 안되요?

▲ 사후신청 과제는 완료 후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시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기에 신청할 때 완료되어 모든 서류가 다 갖춰 있어야합니다.

Q. 올해에는 지원신청금액 최소 100만원 하한선이 새로 생겼나요?

▲ 2020년도부터 더욱 완성도 있는 산출물을 지원하기 위 일부 단위사업에 지원신청금액 100만원 하한선이(총소요비용 200만원이상) 생겼습니다.

Q. 시험분석은 작은 금액의 것도 있고 큰 금액의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금년도에 받은 시험분석 건의 합이 지원신청금액 100만원이상(총 소요비용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건당 30만원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에시)

사유	지원가능여부	진흥원 지원금	기업 부담금(50%)	총소요비용	구분
지원신청금액	×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험분석 1 건
<i>100</i> 만원	0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시험분석 1건
이상이여야 1	0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시험분석 5건

Q. 전년도에 12월에 완료한건은 신청하면 안되나요?

▲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증빙 및 결과물이 2020년도 산출물이어야 합니다.

Q. 제작(대행)업체 리스트가 따로 있나요?

▲ 없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제작(대행)업체와 진행가능. 소재지는 상관없으나, 업태. 종목에 지원사업 제작이 수행가능한 관련 업이 있어야 합니다.

Q. 선정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나요?

▲ 선정결과는 신청기업의 담당자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공고문의 기재된 선정발표일에 발송되며, 선정발표일이 지연될 경우 개별로 연락드립니다.

Q. 신청서에 기재한 진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간연장이 가능한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후 1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월 31일까지 연장가능합니다.

Q. 제작(대행)업체를 변경해도 되나요?

▲ 피치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제작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후 1회에 한해 변경가능하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절차 및 제출서류는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중도포기가 가능한가요?

A 중도포기하는 경우 내년도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완료해야하나요?

▲ 기업이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한 진행기간 내에 완료해야하며, 진행기간 연장은 최대 202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진행기간 내 완료하는대로 증빙 갖춰서 제출 시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됩니다.